

EY한영 월간 ESG Newsletter

2026년 9월호

발행일 | 2026년 9월 18일

구독 신청·수신 거부 링크

In Focus

- + GHG 프로토콜 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 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바로가기](#))
- +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바로가기](#))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2
	· 환경부,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작성 지원 위한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 2종 공개	3
	· 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토록 제도 개선...12월 시행 예정	5
02	해외 업데이트	7
	· GHG 프로토콜·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8
03	주목할 간행물	9
	·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10

01

국내 업데이트

환경부,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작성 지원 위한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 2종 공개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과 투자자 요구에 따라 기업의 자연자본에 대한 공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와 해설서가 마련됨. 8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¹ 실무 해설서' 2종을 공개했다고 [발표](#)함.

배경

- '26년 10월 중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존 공시기준인 IFRS S1 체계 내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NFD)의 분석법을 활용해 자연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실무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실무서'로 개발 결정...올해 10월 초안 공개 예정" 참고)
 - IFRS S1상 기업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 지침으로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대응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환경부는 그간 TNFD 권고안 번역본과 리프 접근법 번역본, 시범·가상보고서 등 10권의 자료를 발간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지원해왔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작성된 기존 자료와 공시 사례만으로는 실제 분석 및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환경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체계의 이해부터 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실무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를 마련함.

자연자본공시 안내서

- 자연자본공시 관련 국내외 공시 동향 및 주요 체계, 공시 지표를 설명
- 예측(시나리오) 분석, 생물군계², 이해관계자 참여, 자연전환계획³ 수립 방법, 자연 관련 분석도구 활용법 등 자연자본공시를 위한 정보 제공

리프 실무 해설서

-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인 리프 접근법을 국내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프 각 단계별 해설, 점검표(체크리스트), 해외·업종별 적용 사례를 수록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로, ▲사업장이 자연과 접하는 지점을 찾고(Locate)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단하며(Evaluate) ▲이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 뒤(Assess) ▲대응 전략을 세워 공시를 준비하는(Prepare) 네 단계

² 생물군계(Biome): 기후, 지형, 식생, 동식물 구성 등 유사한 생태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생태계의 집합체로, 툰드라 생물군계, 산호초 생물군계, 사바나 생물군계 등이 대표적인 예임

³ 기업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연자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방식을 개편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채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국제 공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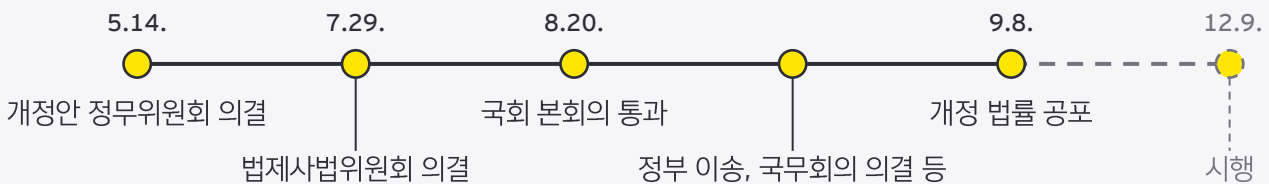
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토록 제도 개선 ...12월 시행 예정

상장사가 합병 시 의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됨. (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정부·여당,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재계도 긍정 평가” 참고)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함.

배경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¹하고 있음. 이때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있어, 합병비율(합병하는 회사 간 주식의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을 지배주주 등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더 나아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개정
1) 합병 등²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방법	
•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	• 시가, 자산가치³, 수익가치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가치 산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계약체결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 허용)

²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³ 순자산/발행주식총수

⁴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

현행	개정
1) 합병 등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계속)	
② 합병 등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 시 가격 산정방법	
주주-법인 간 협의 → 시가 →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주주-법인 간 협의 →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 →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2) 절차적 장치 강화 통해 합병 등의 거래 시 공정성 제고	
①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 및 공시 강화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	해당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②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공시 강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시해야 함
③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공시 강화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에 대한 별도 공시 의무 없음	특수관계인¹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²를 추가 공시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고, 일반주주는 공시자료를 확인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또한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권리 구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8일 [공포](#)됐으며, 12월 9일부터 시행됨.

¹ 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²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

02

해외 업데이트

GHG 프로토콜·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In Focus

온실가스 프로토콜(GHGP)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들을 통합해 단일한 기준 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 7월 29일 GHGP는 지난해 ISO와 구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의 단일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통합 대상이 된 기준은 다음과 같음.

GHGP 기준

- **활용 현황:**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후 관련 공시 및 목표 설정 체계들이 온실가스와 관련해 GHGP 기준을 적용하거나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SSB는 제3자 기준인 GHGP 기준이 개정될 경우, ISSB의 제·개정 정규절차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하여 기준서에 반영하도록 함
 - ISSB 기준에 기반해 마련된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GHGP 기준 또는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통합 대상 기준 및 지침:**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스코프 2 가이드스 ▲스코프 3 기준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AMI) (개발 중)
 - AMI 기준은 기업의 물리적 배출량과 시장 메커니즘(예: 재생에너지 인증서)이 각각 기후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 보여주고자 함

ISO 기준

- **활용 현황:** ISO 14064 시리즈(1~3)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 측정·보고·검증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통합 대상 기준:** ISO 14064-1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GHGP는 이날 공개한 기준 개발 [계획서](#)에서 통합 기준은 크게 '일반 요구사항 및 물리적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AMI'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종 구조 및 세부 구성은 개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힘. 2027년 2분기에 통합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028년 4분기에 최종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팀 모힌(Tim Mohin) GHGP CEO는 "통합 기준은 기업 보고를 단순화하고 중복을 줄이며, 시장과 국가·지역 간 공시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03

주목할 간행물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In Focus



경제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에 따른 사회·환경적 비용은 사회 전반에 전가되고, 그 규모가 지구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추출주의(extractivism)' 관행이 기업의 사업 모형에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EY가 추출주의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과 지구의 번영을 핵심 가치로 삼는 '재생 경제(regenerative economy)'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G7 국가에서 주주 배당금은 근로자 임금보다 3배, 법인세 납부액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으며,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¹ 손실과 생물다양성 손실 비용도 각각 45%,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추출주의를 고착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주주 이익을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단기적 재무성과에 집중하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구조 ▲소유주와 경영진의 자기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를 보상·강화하는 인센티브 체계 ▲수탁자로서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가능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 ▲기업의 사회·환경 관련 선언과 실제 행동의 간극 ▲복잡하고 파편화된 조세 제도 등을 제시함.

보고서는 재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당국, 금융시장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다양한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재생 경제가 확산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고 이에 비추어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현재의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제는 기업들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단순히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¹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이란 소득·자산 등 경제적 자원과 이를 통한 소비로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의미하며, 전체 소득이 같더라도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사회 전체의 후생은 낮아짐. 불평등으로 인해 손실된 경제적 후생이란 예를 들어 ▲소득이 더 고르게 분배됐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 ▲빈곤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갈등 대응에 쓰이는 비용이 줄어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의미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전무 (Partner)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오창택 전무 (Partner)

EY한영 ESG Impact Hub 인증부문 리더

chang-taek.oh@kr.ey.com

안효빈 전무 (Partner)

EY한영 ESG Impact Hub 금융부문 리더

hyo-bin.an@kr.ey.com

이광림 전무 (Partner)

EY한영 ESG Impact Hub 컨설팅부문 리더

gwang-rim.yi@kr.ey.com

우승엽 전무 (Partner)

EY한영 ESG Impact Hub 세무부문 리더

seung-yeop.woo@kr.ey.com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Partner)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ESG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김채원 직원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ESG 뉴스레터 구독 신청·수신 거부 링크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